전기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안)
[본문] **전기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	[본문] **전기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
제4조(제출서류) ① PQ심사에 참여코자 하는 용역업체는 입찰·공모 공고 시 지정한 일시까지 별표 4의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및 작성안내"에 따라 별표 5의 양식 2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일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⑥ 용역업체의 현재 진행중인 설계용역이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미신고 되어있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양식 3에 따라 발주부서업무수행확인서에 해당 설계용역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4조(제출서류)** ① PQ평가에 참여코자 하는 용역업체는 입찰·공모 공고 시 지정한 일시까지 별표 4의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및 작성안내"에 따라 별표 5의 별지 제2호서식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일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용역업체의 현재 진행중인 설계용역이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미신고 되어있는 경우에는 별표 5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주부서업무수행확인서에 해당 설계용역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⑦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자기평가서 및 평가서류확인) ① 제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용역업체가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점수(이하 "자기평가서"라 한다)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적격심사 대상자는 별표 5의 제출서류 목록표에서 정한 모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기평가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위 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로서 적격심사 대상자의 PQ심사 증빙자료 검증 결과 제5조 제1항의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결격처리하며 차순위자를 심사할 수 있다.	**제4조의2(자기평가서 및 평가서류확인)** ① 제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용역업체가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점수(이하 "자기평가서"라 한다)로 평가할 수 있다. <삭 제> ② 다만, 위 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는 경우 개찰 이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정하여 별표5에서 정한 평가서류 일체를 받아 평가점수의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③ ①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로서 적격심사 대상자의 PQ평가 증빙서류 검증 결과, 제5조의 기준에 따른 결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를 심사할 수 있다.
제5조(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결격사항)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모 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접수마감일시 후에 PQ심사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3. 별표 2에 따른 PQ평가 세부기준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PQ평가 세부항목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	**제5조(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결격사항)**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모 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접수마감일시 후에 PQ평가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3. 별표 2에 따른 PQ평가 세부기준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PQ평가 세부항목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

현 행	개 정(안)
4. 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5. 공고일 현재 파산신청 중에 있거나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6. 공고일 현재 경영부실로 부도 등이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어있지 않은 경우 7. 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④ · ⑤ (생략)	4. 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5. 공고일 현재 파산신청 중에 있거나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6. 공고일 현재 경영부실로 부도 등이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어있지 않은 경우 7. 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용역의 참여분야 분류) ① (생략) ② "일반건축물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시설로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분류표 중 "건축물시설"에 해당하는 분야 중 주거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③ · ④ (생략)	**제6조(용역의 참여분야 분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일반건축물시설"이란 <삭 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분류표 중 "건축물시설"에 해당하는 분야 중 주거시설을 제외한 각각의 시설을 말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기타사항) ① · ② (생략) ③ 평가결과 선정된 용역업체의 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PQ평가 참여기술인력이 퇴사, 사고 등으로 해당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LH의 승인을 받아 당초 참여기술인 심사시 취득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인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LH의 요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해지)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8조(기타사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낙찰자로 선정된 용역업체의 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PQ평가 참여기술인력이 퇴사, 사고 등으로 해당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LH의 승인을 받아 당초 참여기술인 심사시 취득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인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LH의 요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해지)할 수 있다. 또한, 기술인이 낙찰자 선정 전 사망·퇴사 등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안)

차 례

[별표1] : 전기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업무흐름도 ---- 9
[1] 전기설계용역 지구(설계공모 제외) ---- 9
[2] 설계공모 지구 ---- 10
[별표2]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방법 ---- 11
[1] 평가기준 ---- 11
[2] 평가방법 ---- 12
[별표3] : 유사용역 인정범위 ---- 18
[별표4] :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및 작성안내 ---- 19
[별표5] : 제출서류 목록표 ---- 20
[양식1] 표지서식 예시 ---- 21
[양식2]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 22
[1] 종합평가표 ---- 23
[2] 항목별 세부 평가 ---- 24
1. 참여기술인력 평가 ---- 24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 26
3. 신용도 평가 ---- 27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 27
5. 업무중첩도 평가 ---- 28
6. 감점 평가 ---- 29
[양식3] 발주부서 업무수행확인서 ---- 31
[양식4] 재정상태검토보고서 ---- 32

차 례

[별표1] : 전기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업무흐름도 ---- 9
[1] 전기설계용역 지구(설계공모 제외) ---- 9
[2] 설계공모 지구 ---- 10
[별표2]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방법 ---- 11
[1] 평가기준 ---- 11
[2] 평가방법 ---- 12
[별표3] : 유사용역 인정범위 ---- 18
[별표4] :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및 작성안내 ---- 19
[별표5] : 제출서류 목록표 ---- 20
[별지 제1호서식] 표지서식 예시 ---- 21
[별지 제2호서식]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 22
[1] 종합평가표 ---- 23
[2] 항목별 세부 평가 ---- 24
1. 참여기술인력 평가 ---- 24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 26
3. 신용도 평가 ---- 27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 27
5. 업무중첩도 평가 ---- 28
6. 감점 평가 ---- 29
[별지 제3호서식] 발주부서 업무수행확인서 ---- 31
[별지 제4호서식] 재정상태검토보고서 ---- 32

현 행	개 정(안)
[별표 1] 전기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업무흐름도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전기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업무흐름도 (제3조제1항 관련)
[1] 전기설계용역 지구(설계공모 제외)	[1] 전기설계용역 지구(설계공모 제외)
전기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업무흐름도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업무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전기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업무흐름도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업무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신 설>	

절 차	내 용
입찰공고	· 입찰공고문 참조
↓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류 제출 (용역업체)	·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붙임자료 제출 (PQ평가 증빙서류 일체 제출) → 제출된 서류는 교체 및 수정 불가 · 참여기술인력 업무중첩도 확인 → LH 전자조달시스템(e-Bid) 게시
↓	
PQ평가 및 점수 통보	· 입찰참가자격 보유자의 PQ평가 · PQ심사 결과 80점 이상 입찰참가적격자 전자조달시스템 통보
↓	
입찰 및 개찰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 및 개찰 ·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	
적격심사 및 낙찰자 선정	· 계약부서의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 선정
↓	
계 약	· 계약 체결

현 행	개 정(안)
<신 설>	단, 제4조의2 ①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업무흐름도는 아래를 따른다.

절 차	내 용
입찰공고	· 입찰공고문 참조
↓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류 제출 (참여 설계업체)	·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양식2) 및 붙임자료 제출 (종합평가서에 자기평가평점 포함) → 제출된 서류는 교체 및 수정 불가
↓	
PQ심사 및 점수 통보 (자기평가점수 반영)	· PQ심사 결과 100점을 초과할 경우 100점으로, 100점이하일 경우 원 심사점수를 전자조달 시스템으로 통보
↓	
입찰 및 개찰 (적격심사대상자 순위결정)	· PQ심사 결과 80점 이상 입찰참가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 및 개찰 <신 설>
↓	
적격심사서류 제출 (적격대상자선정)	· 적격심사대상자 PQ증빙서류 제출 · 기한내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적격심사 대상자 참여기술인력 업무중첩도 확인 → LH 전자조달시스템(e-Bid) 게시
↓	
적격심사 및 낙찰자 선정	·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PQ서류 증빙자료 검증 실시 ·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 선정 · 부적격 판정시 차순위자 평가
↓	
계 약	· 계약 체결

절 차	내 용
입찰공고	· 입찰공고문 참조
↓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류 제출 (용역업체)	·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붙임자료 제출 (종합평가표에 자기평가점수 포함) → 제출된 서류는 교체 및 수정 불가
↓	
PQ평가 및 점수 통보 (자기평가점수 반영)	· 입찰참가자격 보유자의 PQ평가 · PQ평가 결과 80점 이상 입찰참가적격자 전자조달시스템 통보
↓	
입찰 및 개찰 <삭 제>	· <삭 제>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 및 개찰 ·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	
적격심사대상자 PQ평가 검증 <삭 제>	· 적격심사대상자 PQ평가 증빙서류 제출 및 검증 실시 · 기한내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적격심사 대상자 참여기술인력 업무중첩도 확인 → LH 전자조달시스템(e-Bid) 게시
↓	
적격심사 및 낙찰자 선정	· <이 동> ·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 선정 · <삭 제>
↓	
계 약	· 계약 체결

현 행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2항 관련)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2항 관련)

[1]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평가방법	배 점
1. 참여기술인력	구 분 / 책임기술자 / 참여기술자 / 계 계 / 30 / 20 / 50 자격 또는 등급 / 5 / 5 / 10 경 력 / 10 / 5 / 15 실 적 / 15 / 10 / 25 - 자격 또는 등급 - 경력 - 실적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50) 10 15 25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 용역 수행성과 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15) 8 5 2
3. 신 용 도	- 영업정지 - 신용평가등급	절대평가 절대평가	(10) 7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개발실적 - 기술개발투자실적 - 교육실적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15) 4 8 3
5. 업무중첩도	- 책임기술자 - 참여기술자	절대평가 절대평가	(10) 6 4
6. 감점	- 부실벌점 - 입찰 불참 - 품질미흡/우수통지서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최대 -5점
합 계			100

개 정(안)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2항 관련)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2항 관련)

[1]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평가방법	배 점
1. 참여기술인력	구 분 / 책임기술자 / 참여기술자 / 계 계 / 30 / 20 / 50 자격 또는 등급 / 5 / 5 / 10 경 력 / 10 / 5 / 15 실 적 / 15 / 10 / 25 - 자격 또는 등급 - 경력 - 실적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50) 10 15 25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 용역 수행성과 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15) 8 5 2
3. 신 용 도	- 영업정지 - 신용평가등급	절대평가 절대평가	(10) 7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개발실적 - 기술개발투자실적 - 교육실적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15) 4 8 3
5. 업무중첩도	- 책임기술자 - 참여기술자	절대평가 절대평가	(10) 6 4
6. 감점	- 부실벌점 - 입찰 불참 - 품질미흡통지서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최대 -5점
합 계			100

현 행

[2] 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력 (50점)

가. 자격 또는 등급 (10점)

① ~ ③ (생략)

④ 당해용역 입찰공고시 당해용역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등급 및 자격요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한 등급 및 자격요건 미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경력 (15점)

- 책임기술자 (10점)

경 력	16년 이상	12년이상 16년미만	6년이상 12년미만	6년미만
배 점	10점	9점	8점	7점

- 참여기술자 (5점)

경 력	13년 이상	10년이상 13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5년미만
배 점	5점	4점	3점	2점

① ~ ④ (생략)

다. 실적 (25점)

유사용역 참여기간	18년이상	15년이상 18년미만	10년이상 1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5년미만
책임기술자	15	14	13	12	11
참여기술자	10	9	8	7	6

① 참여기술인력 실적은 다음의 유사용역 범위에 해당하는 최근 5년간 설계 또는 설계감리 용역수행 참여기간만 인정하고, 중복작성 기간에 대해서도 인정하며, 실적인정 비율은 다음과 같다. [별표 3 참조]

- 해당용역이 공동주택일 경우 : 주거시설은 100퍼센트, 주거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시설은 60퍼센트 적용
- 해당용역이 일반건축물일 경우 : 일반건축물은 100퍼센트, 일반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시설은 60퍼센트 적용
- 해당용역이 업무시설일 경우 : 업무시설은 100퍼센트, 업무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시설은 60퍼센트 적용
- 해당용역이 도시기반인 경우 : 도로, 교량, 터널, 쓰레기소각, 오·폐수처리, 상·하수도·정수시설, 공원시설은 100퍼센트, 그 외 건축물시설은 60퍼센트 적용

예시) 공고일이 '12.2.28일인 경우 '07.2.28~'12.2.27 기간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

② ~ ④ (생략)

개 정(안)

[2] 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력 (50점)

가. 자격 또는 등급 (10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당용역 입찰공고시 해당용역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등급 및 자격요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한 등급 및 자격요건 미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경력 (15점)

- 책임기술자 (10점)

경 력	14년 이상	10년이상 14년미만	6년이상 10년미만	6년미만
배 점	10점	9점	8점	7점

- 참여기술자 (5점)

경 력	12년 이상	8년이상 12년미만	5년이상 8년미만	5년미만
배 점	5점	4점	3점	2점

① ~ ④ (현행과 같음)

다. 실적 (25점)

유사용역 참여기간	16년이상	12년이상 16년미만	9년이상 12년미만	5년이상 9년미만	5년미만
책임기술자	15	14	13	12	11
참여기술자	10	9	8	7	6

① 참여기술인력 실적은 다음의 유사용역 범위에 해당하는 최근 5년간 설계 또는 설계감리 용역수행 참여기간만 인정하고, 중복작성 기간에 대해서도 인정하며, 실적인정 비율은 다음과 같다. [별표 3 참조]

- 해당용역이 공동주택인 경우: 주거시설(21) 실적은 100%, 주거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시설(20, 22-29) 실적은 60% 적용
- 해당용역이 일반건축물시설(20, 22-29)인 경우: 해당 일반건축물시설 실적은 100%, 해당 일반건축물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시설 실적은 60% 적용
  예시) 해당용역이 업무시설(22)일 경우: 업무시설(22) 실적은 100%, 업무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시설(20-21, 23-29) 실적은 60% 적용
- 해당용역이 도시기반인 경우: 도로시설(30), 교량시설(31), 터널시설(32), 쓰레기소각시설(41), 오·폐수처리시설(42), 상수도·하수도·정수 시설(43), 공원시설(44) 실적은 100%, 건축물시설(20-29) 실적은 60% 적용

예시) 공고일이 '26.01.01일인 경우 '21.01.03~'26.01.01 기간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안)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5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5점)
- 실적금액 (8점) (생략)	- 실적금액 (8점) (현행과 같음)
- 실적건수 (5점) (생략)	- 실적건수 (5점) (현행과 같음)
- 용역 수행성과 평가 (2점) (생략)	- 용역 수행성과 평가 (2점) (현행과 같음)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은 입찰공고일 기준 용역업체가 최근 5년간 준공한 1천만원 이상의 전력시설물 설계용역과, 현재 수행중인 설계용역 중 기성부분이 1천만원 이상인 전력시설물 설계용역으로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용역의 기성부분 누계실적으로서 당해설계용역비(설계가격) 대비 누계실적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②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는 입찰공고일 기준 용역업체가 최근 5년간 준공한 1천만원 이상의 전력시설물 설계용역과 현재 수행중인 설계용역 중 기성부분이 1천만원 이상인 전력시설물 설계용역으로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용역의 건수를 적용하되 현재 수행중인 설계용역의 건수는 기성비율을 적용한다. <이 동> ③ 참여업체 유사용역실적 금액 및 건수의 인정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해당용역이 공동주택일 경우 : 주거시설은 100퍼센트, 주거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시설은 60퍼센트 적용 · 해당용역이 일반건축물일 경우 : 일반건축물은 100퍼센트, 일반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시설은 60퍼센트 적용 · 해당용역이 업무시설일 경우 : 업무시설은 100퍼센트, 업무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시설은 60퍼센트 적용 · 해당용역이 도시기반인 경우 : 도로, 교량, 터널, 쓰레기소각, 오·폐수처리, 상·하수도·정수시설, 공원시설은 100퍼센트, 그 외 건축물시설은 60퍼센트 적용 **예시) 공고일이 '12.2.28일인 경우 '07.2.28~'12.2.27 기간에 발생된 실적금액(준공·기성누계)을 모두 인정** ④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확인서로 평가한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설계용역 중 설계용역발주자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각 호의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발주부서업무수행확인서(별표 5의 양식 3)의 기성부분 누계실적도 인정한다. ⑤ · ⑥ (생략) ⑦ 입찰공고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실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며, 제1항의 당해설계용역비는 해당용역 설계가격 중 전기설계금액을 의미한다. ⑧ ~ ⑩ (생략)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은 입찰공고일 기준 용역업체가 최근 5년간 준공한 1천만원 이상의 전력시설물 설계용역과, 현재 수행중인 설계용역 중 기성부분이 1천만원 이상인 전력시설물 설계용역으로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용역의 기성부분 누계실적으로서 해당 설계용역비(설계가격) 대비 누계실적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②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는 입찰공고일 기준 용역업체가 최근 5년간 준공한 1천만원 이상의 전력시설물 설계용역과 현재 수행중인 설계용역 중 기성부분이 1천만원 이상인 전력시설물 설계용역으로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용역의 건수를 적용하되 현재 수행중인 설계용역의 건수는 기성비율을 적용한다. **예시) 공고일이 '26.01.01일인 경우 '21.01.03~'26.01.01 기간에 발생된 실적금액(준공·기성누계)을 모두 인정** ③ 참여업체 유사용역실적 금액 및 건수의 인정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해당용역이 공동주택인 경우: 주거시설(21) 실적은 100%, 주거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시설(20, 22-29) 실적은 60% 적용 · 해당용역이 일반건축물시설(20, 22-29)인 경우: 해당 일반건축물시설 실적은 100%, 해당 일반건축물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시설 실적은 60% 적용 예시) 해당용역이 업무시설(22)일 경우: 업무시설(22) 실적은 100%, 업무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시설(20-21, 23-29) 실적은 60% 적용 · 해당용역이 도시기반인 경우: 도로시설(30), 교량시설(31), 터널시설(32), 쓰레기소각시설(41), 오·폐수처리시설(42), 상수도·하수도·정수 시설(43), 공원시설(44) 실적은 100%, 건축물시설(20-29) 실적은 60% 적용 <이 동> ④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설계용역수행확인서(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급)로 평가한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설계용역 중 설계용역발주자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각 호의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발주부서업무수행확인서(별표 5의 별지 제3호서식)의 기성부분 누계실적도 인정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입찰공고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실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며, 제1항의 해당 설계용역비는 해당용역 설계가격 중 전기설계금액을 의미한다. ⑧ ~ ⑩ (현행과 같음)
3. 신용도 (10점)	

현 행

가. 영업정지 (7점) (생략)

나. 신용평가등급(3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신용도 평가는 다음과 같이 행한다.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점수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3.0
BBB0, BBB-	A30, A3-	BBB0, BBB-	2.9
BB+, BB0, BB-	B+, B0	BB+, BB0, BB-	2.8
B+, B0, B-	B-	B+, B0, B-	2.7
CCC+이하	C 이하	CCC+이하	2.6

①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 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한다)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③ (생략)

4.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15점)

가. 개발실적 (4점)

①·② (생략)

③ 전력기술에 관한 신기술 인증, 특허, 실용신안은 설계업체(대표자 포함)가 직접개발한 실적으로 설계업체 명의로 최초지정 또는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설계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은 제외)한다.

- 직접 개발한 실적이라 함은 출원자(업체 또는 업체 대표자)와 특허권자가 같은 경우를 말하며, 출원권을 매입(투자)하여 최초 특허권자가 된 경우에는 개발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④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지정자 또는 최초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8점)

① · ② (생략)

③ 해당 설계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전기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식 별표 5의 양식 4 재정상태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공인회계(세무)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포함)

다. 교육실적 (3점)

개 정(안)

3. 신용도 (10점)

가. 영업정지 (7점) (현행과 같음)

나. 신용평가등급(3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신용도 평가는 다음과 같이 행한다.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점수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3.0
BBB0, BBB-	A30, A3-	BBB0, BBB-	2.9
BB+, BB0, BB-	B+, B0	BB+, BB0, BB-	2.8
B+, B0, B-	B-	B+, B0, B-	2.7
CCC+이하	C 이하	CCC+이하	2.6

①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 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 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한다)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4.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15점)

가. 개발실적 (4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전력기술에 관한 신기술 인증, 특허, 실용신안은 설계업체(대표자 포함)가 직접개발한 실적으로 설계업체 명의로 최초지정 또는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설계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은 제외)한다.

- 직접 개발한 실적이라 함은 출원자(업체 또는 업체 대표자)와 특허권자가 같은 경우를 말하며, 출원권을 매입(투자)하여 최초 특허권자가 된 경우에는 개발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특허등록원부의 특허료란에 기재된 유지기간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하며, 최초지정자 또는 최초출원자가 업체와 현 대표자로 구성된 경우는 1인으로 간주된다.

④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지정자 또는 최초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8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해당 설계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전기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식 별표 5의 별지 제4호서식 재정상태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공인회계(세무)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포함)

현 행	개 정(안)
① 참여기술인력이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설계관련 교육훈련(철도신호과정은 불인정)을 받은 경우 다음기준에 따라 합산 적용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3 점 - 1주이상 2주미만 〃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5점 <신 설> ② (생략)	다. 교육실적 (3점) ① 참여기술인력이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설계관련 교육훈련(단, 철도신호과정은 불인정)을 받은 경우 다음기준에 따라 합산 적용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3 점 - 1주이상 2주미만 〃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5점 예시) 공고일이 '26.01.01일인 경우 수료일이 '23.01.03~'26.01.01 기간 이내이면 인정 ② (현행과 같음)
5. 업무 중첩도 (10점) 참여기술인력이 입찰공고일 현재 LH에서 수행중인 설계용역 중(건축설계용역에 포함된 전기설계의 분담이행용역은 제외) 전기설계용역비가 3천만원 이상이며, 잔여 과업기간이 90일 이상이고, 입찰공고일 기준 잔여용역금액의 비율이 20퍼센트 초과하는 용역에 대하여 산정 한다. ① 책임기술자(6점), 참여기술자(4점)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 책임기술자 :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 1건당 0.3점씩 감점 - 참여기술자 :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 1건당 0.2점씩 감점 <신 설> ②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미신고된 용역에 대해 용역업체는 참여기술자, 계약기간, 금액, 기성금을 확인할 수 있는 별표 5의 양식 3 발주부서업무수행확인서 또는 "최초·변경 계약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5. 업무 중첩도 (10점) 참여기술인력이 입찰공고일 현재 LH에서 수행중인 설계용역 중(건축설계용역에 포함된 전기설계의 분담이행용역은 제외) 전기설계용역비가 3천만원 이상이며, 잔여 과업기간이 90일 이상이고, 입찰공고일 기준 잔여용역금액의 비율이 20퍼센트 초과하는 용역에 대하여 산정한다. ① 책임기술자(6점), 참여기술자(4점)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 책임기술자 :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 1건당 0.3점씩 감점 - 참여기술자 :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 1건당 0.2점씩 감점 ② 타 용역에 상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 책임 및 참여 기술자로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 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력기술인 업무중첩도 확인서와 감리원 업무중첩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미신고된 용역에 대해 용역업체는 참여기술자, 계약기간, 금액, 기성금을 확인할 수 있는 별표 5의 별지 제3호서식 발주부서업무수행확인서 또는 "최초·변경 계약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 ③ · ④와 같음)
6. 감점 (최대 -5점) 가. 부실벌점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력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력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나. (현행과 같음) 다. 품질미흡/우수통지서 LH에서 발급하는 품질미흡통지서 또는 품질우수통지서에 따라 감점을 부여 또는 상쇄한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① 품질미흡통지서 : 1회당 0.5점 감점 ② 품질우수통지서 : 1회당 1점 감점 상쇄(품질미흡통지서 감점상쇄용)	6. 감점 (최대 -5점) 가. 부실벌점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력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력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나. (현행과 같음) 다. 품질미흡통지서 LH에서 발급하는 품질 미흡통지서의 유효기간 동안 발급된 누계횟수에 따라 감점을 부여한다. - 1회당 : 1.0점 감점 부여(최대 3.0점) - 유효기간 · 용역업체 : 발급일 기준 1년간 유효(종료일 포함) · 기 술 자 : 발급일 기준 1년간 유효(종료일 포함)

현 행	개 정(안)
[별표 4]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및 작성안내(필독)(제4조제1항 관련)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및 작성안내 (필독) 1.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생략)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제출 안내 <신 설>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자기평가평점'으로 평가하고, 가격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증빙자료(도서)로 평가결과 확정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공고 → 자기평가서 (PQ서류제출 마감일까지) → PQ평가 결과통보 (자기평가서 검토 (입찰참가자격 요건 등)) → 개찰 → 적격심사 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적격심사 대상자 개별연락후 제출) → 낙찰자결정 및계약 나. 제출서류 1) **PQ 자기평가서 제출 마감시까지** :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양식2) 및 붙임파일 일체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방법으로 제출 2)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 이후:** PQ증빙서류(도서) 1부(입찰참가자격서류 등 [별표5] 일체)	<품질 우수통지서> LH 발급횟수에 따라 가점 부여하며, 품질미흡통지서 감점상쇄용으로만 적용 - 1회당 : 1.0점 감점 상쇄 - 유효기간 · 용역업체 : 발급일 기준 1년간 유효(종료일 포함) · 기 술 자 : 발급일 기준 1년간 유효(종료일 포함) [별표 4]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작성안내(필독)(제4조제1항 관련)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작성안내 (필독) 1.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현행과 같음)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제출 안내 가. 입찰공고 시 제출된 모든 PQ평가서류를 평가하고, 개찰 후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입찰공고 → PQ서류 제출 (PQ평가서류 (파일+도서)) → PQ평가 결과통보 (입찰참가자격 판정 후 PQ평가 점수 통보) → 개찰 → 적격심사 (적격심사 대상자 적격심사 서류 제출) → 낙찰자결정 및 계약 나. 제출서류 1) **PQ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붙임파일, 제본도서 일체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방법으로 제출 2)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 이후:** 계약부서의 안내사항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 **※ 단, 제4조의2 ①에 따른 사업수행능력(PQ) 평가할 경우 신청서류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자기평가점수'로 평가하고, 가격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PQ평가 증빙서류(도서)로 평가결과 확정하여 낙찰자를 결정 입찰공고 → PQ서류 제출 (PQ자기평가서류 (파일)) → PQ평가 결과통보 (입찰참가자격 판정 후 PQ평가 점수 통보 (자기평가점수 활용)) → 개찰 → PQ평가 검증 및 적격심사 (적격심사 대상자 PQ평가 증빙서류(도서)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 낙찰자결정 및 계약 나. 제출서류 1) **PQ 자기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붙임파일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방법으로 제출 2)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 이후:** PQ증빙서류(도서) 1부(입찰참가자격서류 등 [별표5] 일체)와

현 행

· 규격 : A4 용지, 제본 : 좌철 (표지: 백색), 평가항목별 라벨(label) 작성 부착

[별표 5] 제출서류 목록표(제4조 제1항, 제4조의2 제1항 관련)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비고
총 괄	1	전기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표지서식)	신 청 자	양식1
	2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신 청 자	양식2
	3	입찰참가자격 관련서류		
		- 설계업등록증 사본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조 달 청	
	4	참여업체 관련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신 설>		
		- 인감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 사용인감계		
	5	종합평가표(자기평가서)	신 청 자	
참여기술인력	6	가. 자격 또는 등급		
		- 전력기술인/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갑지) 또는 자격수첩 사본(원본대조필)	관련협회 관할기관	
		- 재직증빙서류(기술자 보유확인서 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관련협회 관할기관	
		나. 경력·실적(경력부분에 1회 편철)		
		-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유사용역수행실적	7	최근 5년간 유사용역수행실적		
		-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발주부서업무수행확인서(진행용역)	신 청 자	양식3
		- 준공평가결과 문서(평가적용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용도	8	가. 영업정지		
		-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상의 제재내역(업체)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경력확인서상의 제재내역(책임·참여기술자)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나. 신용평가등급		
		- 유효기간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업자 인정업체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9	가. 개발실적		
		- 신기술 인증서, 특허증 또는 실용신안등록증	관할기관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신 청 자	양식4
		- 공인회계사(세무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교육실적		
		- 경력확인서 또는 교육훈련 수료증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업무중첩도	10	업무중첩도 확인서류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신 설>	신 청 자	양식3
		- 협회 미신고시 제출서류(발주부서업무 수행확인서 또는 최초·변경 계약서류 등)	발주기관	
		- 설계용역 중단사실 확인자료(관련 공문사본)		
감점	11	가. 부실벌점 확인서		
		-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업체)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전력기술인 업무중첩도·부실벌점확인서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나. 입찰불참 관련문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품질 미흡/우수 통지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기타	12	* 입찰공고조건상 요구 또는 기타 필요시		

※ 별도 제공되는 업체작성 엑셀파일(자기평가서)은 출력하여 평가항목별로 맨 앞쪽에 각각 편철

개 정(안)

계약부서의 안내사항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

· 규격 : A4 용지, 제본 : 좌철 (표지: 백색), 평가항목별 간지(색상지) 및 라벨(label) 작성 부착,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 해당 건에 연번 및 형광펜 표기

[별표 5] 제출서류 목록표(제4조 제1항, 제4조의2 제1항 관련)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제출기준일	발행기관	비고
총 괄	1	전기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표지서식)		신 청 자	별지1
	2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신 청 자	별지2
입찰참가자격 관련서류	3	설계업등록증 사본		관할기관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공고일	조 달 청	
참여업체 관련서류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할기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개인)사업자등록증명	공고일	관할기관	
		인감증명서	공고일 전 3개월부터	관할기관	
		사용인감계	공고일	신 청 자	
참여기술인력					
자격 또는 등급	5	전력기술인/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갑지) 또는 자격수첩 사본	공고일 -	관련협회 관할기관	
		기술자 보유확인서 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개찰일	관련협회 관할기관	
경력 및 실적	6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경력부분에 1회 편철)	공고일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금액 및 건수	7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	공고일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주부서업무수행확인서(진행용역)		신 청 자	별지3
수행성과	8	준공평가결과 문서	공고시 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용도					
영업정지	9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상의 제재내역(업체) 경력확인서상의 제재내역(책임.참여기술자)	공고일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신용평가등급	10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내	신용정보업자 인정업체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개발실적	11	신기술 인증서, 특허증 또는 실용신안등록증	공고일	관할기관	
		등록원부	공고일 전 1개월부터		
		최초 출원인 확인용			
기술개발 투자실적	12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신 청 자	별지4
		공인회계사(세무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회계사(세무사)등록증 사본	공고일		
교육실적	13	경력확인서 또는 교육훈련 수료증	공고일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업무중첩도	14	전력기술인 업무중첩도·부실벌점 확인서	공고일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감리원 업무중첩도·부실벌점 확인서			
		발주부서 업무수행확인서 최초·변경 계약서류 등 설계용역 중단사실 확인 공문 사본	필요시	신 청 자 발주기관 발주기관	별지3
감점					
부실벌점	15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업체)	공고일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 업무중첩도·부실벌점확인서			
입찰불참	16	입찰불참 관련문서	공고시 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	
품질미흡통지서	17	품질 미흡/우수 통지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기타	18	입찰공고조건상 요구 또는 기타 필요시			

현 행	개 정(안)
※ 양식이 중복되는 경우 엑셀파일만 제출 가능 【양식 1】 전기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표지서식) (생략) 【양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신 청 서 용 역 명 :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 제출하오니 붙임자료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입찰참가자격 관련서류(설계업등록증 사본 등)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5. 자기평가를 완료한 종합평가표(PDF파일, 엑셀파일 포함) 1부. 20 . .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자 : (☎:) (FAX :) (E-Mail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 별도 제공되는 업체작성 엑셀파일(자기평가서)은 출력하여 평가항목별로 맨 앞쪽에 각각 편철 ※ 양식이 중복되는 경우 엑셀파일만 제출 가능 [별지 제1호서식] 전기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표지서식)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신 청 서 용 역 명 :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 제출하오니 붙임자료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입찰참가자격 관련서류(설계업등록증 사본 등) 1식. 2. 참여업체 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식. 3. 자기평가를 완료한 종합평가표 1부. 20 . .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자 : (☎:) <삭 제> (E-Mail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현 행	개 정(안)

[1] 종합평가표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자기평가 평점	심사부서 평가	비 고
분 야 별	배 점	항 목		배 점			
1. 참여기술인력	50	가. 자격 또는 등급	책임기술자	5			절대평가
			참여기술자	5			
		나. 경력	책임기술자	10			〃
			참여기술자	5			
		다. 실적	책임기술자	15			〃
			참여기술자	1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가. 최근 5년간 실적금액		8			〃
		나. 최근 5년간 실적건수		5			〃
		다. 용역 수행성과 평가		2			〃
3. 신 용 도	10	가. 영업정지		7			〃
		나. 신용평가등급		3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5	가. 개발실적		4			〃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8			〃
		다. 교육실적		3			〃
5. 업무중첩도	10	가. 책임기술자		6			〃
		나. 참여기술자		4			〃
6. 감 점		가. 부실벌점 나. 입찰 불참 다. 품질 미흡/우수 통지서		최대 -5점			〃
계							

[1] 종합평가표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자기평가 평점	심사부서 평가	비 고
분 야 별	배 점	항 목		배 점			
1. 참여기술인력	50	가. 자격 또는 등급	책임기술자	5			절대평가
			참여기술자	5			
		나. 경력	책임기술자	10			〃
			참여기술자	5			
		다. 실적	책임기술자	15			〃
			참여기술자	1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가. 최근 5년간 실적금액		8			〃
		나. 최근 5년간 실적건수		5			〃
		다. 용역 수행성과 평가		2			〃
3. 신 용 도	10	가. 영업정지		7			〃
		나. 신용평가등급		3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5	가. 개발실적		4			〃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8			〃
		다. 교육실적		3			〃
5. 업무중첩도	10	가. 책임기술자		6			〃
		나. 참여기술자		4			〃
6. 감 점		가. 부실벌점 나. 입찰 불참 다. 품질미흡통지서		최대 -5점			〃
계							

현 행

[2] 항목별 세부 평가

1. (생략)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15점]

가. 최근5년간 유사용역 실적금액[8점]

유사용역 누계실적금액(A)	당해설계 용역비(B) (설계가격)	환산율(%) (A/B)*100	배 점	평 점	평 가
			8		

- 유사용역 수행실적

구분		연번 (실적 확인서)	설계용역명	발주처	참여 분야	용역 기간	용역금액 (공동도급 지분구분)	적용율 (%)	적용 금액
유사용역	공동주택 (일반건축물,업무, 도시기반 시설)							100	
	소 계								
	기타							60	
	소 계								
계									

※ 증빙서류 : ①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급)
② 발주부서업무수행확인서(현재 진행중인 설계용역)

※ 공통사항 :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의 준공한 용역 및 1천만원 이상인 현재 수행중인 유사용역 작성하고, 증빙서류에 형광펜표시

나 ~ 다. (생략)

3. (생략)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15점]

가. 개발실적(4점)

구분	기 술 명	최초 지정 (출원)일자	경과 기간	출원 인수	배점	평점	평가
신기술 인증							
특허							
실용신안							
계					4		

※ 증빙서류 : 신기술 인증서, 특허증 또는 실용신안등록증과 최근 1월 이내에 관할기관에서 발행한 등록원부 및 최초출원인 확인서를 제출(미제출 및 발행일이 1개월 초과된 확인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개 정(안)

[2] 항목별 세부 평가

1. (현행과 같음)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15점]

가. 최근5년간 유사용역 실적금액[8점]

유사용역 누계실적금액(A)	해당설계 용역비(B) (설계가격)	환산율(%) (A/B)*100	배 점	평 점	평 가
			8		

- 유사용역 수행실적

구분		연번 (실적 확인서)	설계용역명	발주처	참여 분야	용역 기간	용역금액 (공동도급 지분구분)	적용율 (%)	적용 금액
유사용역	공동주택 (일반건축물,업무, 도시기반 시설)							100	
	소 계								
	기타							60	
	소 계								
계									

※ 증빙서류 : ①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급)
② 발주부서업무수행확인서(현재 진행중인 설계용역)

※ 공통사항 :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의 준공한 용역 및 1천만원 이상인 현재 수행중인 유사용역 작성하고, 증빙서류에 형광펜표시

나 ~ 다.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15점]

가. 개발실적(4점)

구분	기 술 명	최초 지정 (출원)일자	경과 기간	출원 인수	배점	평점	평가
신기술 인증							
특허							
실용신안							
계					4		

※ 증빙서류 : 신기술 인증서, 특허증 또는 실용신안등록증과 최근 1월 이내에 관할기관에서 발행한 등록원부 및 최초출원인 확인서를 제출 <삭 제>

현 행

나. 기술개발투자실적(8점)

년도	기술개발 투자액(A)	전기부분 총매출액(B)	비 율 (A/B)×100	배점	평점	평가	비고
				8			
소계				8			

※ 증빙서류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양식 4),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생략)

5. 업무중첩도 평가[10점]

가. (생략)

나. 용역수행 현황

1) 책임기술자 : ○ ○ ○

용역명	용역 기간		잔여기간 (일수)	용역금액	기성금액	잔여금액 (억원)	비고
	시작일	종료일					용역수행중이거나 계약예정인 모든 용역 표기 및 미적용 사유 명기
소 계							

2) 참여기술자 : ○ ○ ○

용역명	용역 기간		잔여기간 (일수)	용역금액	기성금액	잔여금액 (억원)	비고
	시작일	종료일					용역수행중이거나 계약예정인 모든 용역 표기 및 미적용 사유 명기
소 계							

※ 증빙서류 : ① 전력기술인 업무중첩도·부실벌점 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②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미신고시 제출서류(양식3 발주부서업무수행확인서 또는 최초·변경 계약서류 등)
③ 설계용역 중단사실 확인자료(관련 공문사본)

개 정(안)

나. 기술개발투자실적(8점)

년도	기술개발 투자액(A)	전기부분 총매출액(B)	비 율 (A/B)×100	배점	평점	평가	비고
				8			
소계				8			

※ 증빙서류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4호서식),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현행과 같음)

5. 업무중첩도 평가[10점]

가. (현행과 같음)

나. 용역수행 현황

1) 책임기술자 : ○ ○ ○

용역명	용역 기간		잔여기간 (일수)	용역금액	기성금액	잔여금액 (억원)	비고
	시작일	종료일					용역수행중이거나 계약예정인 모든 용역 표기 및 미적용 사유 명기
소 계							

2) 참여기술자 : ○ ○ ○

용역명	용역 기간		잔여기간 (일수)	용역금액	기성금액	잔여금액 (억원)	비고
	시작일	종료일					용역수행중이거나 계약예정인 모든 용역 표기 및 미적용 사유 명기
소 계							

※ 증빙서류 : ①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업무중첩도·부실벌점 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②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미신고시 제출서류(별지 제3호서식 발주부서업무수행확인서 또는 최초·변경 계약서류 등)
③ 설계용역 중단사실 확인자료(관련 공문사본)

현 행	개 정(안)
6. 감점 평가 [최대 -5점] 가. ~ 나. (생략) 다. 품질우수/미흡통지서	6. 감점 평가 [최대 -5점]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품질미흡통지서

현 행

업체명	품질 미흡/우수 통지서	감점(상쇄) 점수	공동도급 비율	평점	평가
계					

※ 증빙서류 : 품질 미흡/우수 통지서(한국토지주택공사 발급)

개 정(안)

업체명	품질 미흡/우수 통지서	감점(상쇄) 점수	공동도급 비율	평점	평가
계					

※ 증빙서류 : 품질 미흡/우수 통지서(한국토지주택공사 발급)

현 행	개 정(안)

【양식 3】 발주부서 업무수행확인서

발주부서 업무수행확인서

□설 계 □설계감리	용역수행사실확인서(발주자 확인용)				
발주자	회 사 명		법인(사업)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소 재 지				
설계업체	회 사 명		업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소 재 지				
용역수행사실내용	①구 분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실시설계 □기타( )			
	②용 역 명				
	③용역개요	◦전기설비 : 간략히 기재 ◦내 용 : 간략히 기재			
	④계약내용	◦형태 : □단독, □공동·승계(이행비율: %) (공동·승계업체 업등록번호 및 업체명 :) ◦용역비 : 천원, ◦기간 : ~			
	⑤계약이행 내용	구 분	금액(천원)	수행 또는 계약기간	비 고
		기성분			합산기재
		계약잔여분			
		총 괄			
	⑥참여전력 기술인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용역기간 / 비 고
발주자 확 인	위와 같이 설계·설계감리용역 수행사실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명: <신 설> 발급확인부서(연락처) : ( ) 담당자명: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양식 4】 재정상태검토보고서

(생략)

[별지 제3호서식] 발주부서 업무수행확인서

발주부서 업무수행확인서

□설 계 □설계감리	용역수행사실확인서(발주자 확인용)				
발주자	회 사 명		법인(사업)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소 재 지				
설계업체	회 사 명		업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소 재 지				
용역수행사실내용	①구 분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실시설계 □기타( )			
	②용 역 명				
	③용역개요	◦전기설비 : 간략히 기재 ◦내 용 : 간략히 기재			
	④계약내용	◦형태 : □단독, □공동·승계(이행비율: %) (공동·승계업체 업등록번호 및 업체명 :) ◦용역비 : 천원, ◦기간 : ~			
	⑤계약이행 내용	구 분	금액(천원)	수행 또는 계약기간	비 고
		기성분			합산기재
		계약잔여분			
		총 괄			
	⑥참여전력 기술인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용역기간 / 비 고
발주자 확 인	위와 같이 설계·설계감리용역 수행사실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명: (인) 발급확인부서(연락처) : ( ) 담당자명: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재정상태검토보고서

(현행과 같음)